

2025년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사업 안내

□ 사업 개요

- 중소식품제조식자재 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신용거래를 위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80~90%를 정부에서 지원
 - 보증금액 : 최대 2억원, 보증기간 : 1년 이내, 보험사 : 서울보증보험
 - 보험요율 : (개인) 연 1.387%~3.481% / (법인) 연 0.533%~4.973%
 - 국비지원 : 농산물 90%(자부담 10%), 그 외 품목 80%(자부담 20%)
- * 보증금액 및 보험요율은 신청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
- 온라인접수 : www.foodbiz.or.kr(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)
 - * 오류 방지를 위해 **chrome**으로 접속 권장
 - ** 기타문의 :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기업지원부 061-931-0724~5

□ 지원 대상

-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을 원료로 매입하는 업체로,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고 거래실적이 있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(연간매출액 1,000억원 이하)
 - * 지원대상 업종 : 식품제조·가공업, 식품첨가물 제조업,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, 식품소분·판매업, 축산물가공업, 축산물판매업, 식육포장처리업, 건강기능식품 제조업, 양곡가공업(다만, 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판매업, 식품소분판매업은 학교 등 단체급식 납품처인 경우에 한함)
 - ** 수산물, 수입산, 완성품거래, 공정 과정 없이 단순 유통하는 경우 **지원제외**
 - *** 공공급식통합플랫폼(eaT) 등록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경우, 신청일 전월까지 1년 이상 거래실적이 있는 업체

□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 (피보험자)

- 국산 농축산물을 공급(판매)하는 업체·국산 농축산물 생산자단체 등

□ 지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

-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, 영업등록증(또는 영업허가증) 사본 각 1부
- 매출확인서* 사본 1부
 - 법인, 개인 : 손익계산서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, 재무제표(세무.회계사 확인 필) 등
- 농축산물 공급업체(피보험자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공급업체와의 거래계약서 사본 1부
- 견적서 및 원산지증명서 또는 축산물등급판정서 1부
- 직접생산제품확인서(aT별도양식) 1부
- (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판매업, 식품소분판매업 업체) 급식납품계약서 등 1부

□ 보증보험 가입시 필요한 서류(서울보증보험)

-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발급한 ‘지원대상 확인서’
- 농축산물 공급업체와 체결한 거래계약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서울보증보험(주)에서 요구하는 자료
- 보험가입 : 서울보증보험(주) 전국 지점 및 홈페이지(www.sgic.co.kr)

□ 기 타

- (유의사항) 사업예산이 소진 시 국고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, 신청업체가 허위서류 또는 허위실적 등을 제출하거나 보증보험을 이용한 수입 농축산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3년간 지원에서 배제
- (실적제출)
 - 보증보험 증권 등록[www.foodbiz.or.kr(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)]
 - 사업 종료 후 국산 농축산물 거래실적을 aT에 제출하여야 함
 - ※ 1차 거래실적 : 보험가입일~보험가입연도 1231 / 2차 거래실적 : 차년도 11~보험만료일
 - ※ **최소 구매의무액 : 보증금액의 80~90% 이상(미달성시 차년도 보증보험료 지원 배제)**
- (기타사항) 원료공급 불가 등 공급업체(피보험자)의 사유로 구매이행 보증보험 계약해지 시 기존 가입한 보증금액 환원

< 참고 :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 절차 >

